

청약 관련 사항은 관련 법령의 개정, 인·허가 과정,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편집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통하여 청약자격, 유의사항 등을 숙지하시어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시 청약자격의 미숙지, 착오 등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안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Check Point |

1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2	경쟁시 청약가점 산정기준 '가점제'에 따라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 '가점제(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청약통장 가입기간)'에 의거한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3	청약통장 가입요건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포항시 거주자, 전용 84㎡ 200만원 이상)

| 청약가점 산정기준표 |

구분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배점	최저: 2점(1년 미만) ~ 최대: 32점(15년 이상)	최저: 5점(0명) ~ 최대: 35점(6명)	최저: 1점(6개월 미만) ~ 최대: 17점(15년 이상)

| 신청대상자 및 유의사항 |

구분	내용
신청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공급 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고 있는 세대주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만이 신청할 수 있음(세대구성원은 청약 불가)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포항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 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릅니다.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내용으로, 상기 내용이 입주자모집공고와 상이할 경우 입주자모집공고가 우선합니다.

※ 본 홈페이지는 편집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청약사항은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